

세입자를 위한 연례 점검 안내 (스팀 라디에이터) 어린이 관련 문의

뉴욕시 지방 법률 151 호(2025년)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 거주 유닛 및 다세대 건물의 공용 공간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증기 난방 장치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내 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유닛이 최소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증기 난방 장치(중앙 난방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증기 난방을 통해 실내를 난방하는 열 교환기)를 최소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이 양식을 작성하여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주택 또는 주거 공간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되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중 언제든지 거주 공간 또는 공동 구역의 스팀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건물주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양식을 귀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대리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_____ 호수: _____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주택 또는 주거 공간에 거주함
 6세 미만의 어린이가 해당 주택 또는 주거 공간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_____ (입주자 서명) _____ (날짜)

입주자 성명 (정자체로 기재) _____

이 양식을 반환할 곳:

소유자 대리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입주자: 귀하의 기록을 위해 사본 하나를 보관하십시오

라디에이터와 관련하여 귀하의 주택/세대에 대한 육안 점검 결과 소유자가 보관해야 하는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2월 15일까지 집주인 또는 담당자에게 반송하십시오. 이 서류의 사본을 하나 보관해 두십시오.

*“거주한다”는 것은 주거 단위 내에서 매주 10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 소유주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스팀 라디에이터 점검 관련 연례 통지서(어린이 관련 문의 포함)를 제공해야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이미 연례 통지서(납 연료 기반 페인트 위험 방지 관련, 어린이 관련 문의 포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동일한 정보를 스팀 라디에이터 점검 관련 연례 통지서를 통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아파트에 대해 집주인이 2월 15일까지 거주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 답변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해당 아파트에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은 해당 연도의 3월 1일까지 주택 보존 및 개발 부서(HPD)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